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29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I.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08. 5. 6.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08. 9. 24.
- 1공구(1.9km ² , 582만m ²) 매립공사	‘09. 3. ~ ‘12. 3.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 7. 19.
- 2공구(2.55km ² , 1,169만m ²) 매립공사	‘11. 12. ~ ‘14. 12.
-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 5.
- 관리기본계획 고시	‘11. 4. 8.
-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4. 26.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6. 28.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3. 8. 16.
-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3. 25.
-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7. 4.
-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4. 11. 25.
-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5. 9. 3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5. 11. 6.
-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6. 1. 4.
-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5. 12.
-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7. 3.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8. 9. 28.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	‘18. 12. 31.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9. 7. 9.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9차) 고시	‘19. 9. 30.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고시	‘20. 2. 25.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고시	‘20. 8. 12.
- 실시계획 변경(12차) 고시	‘20. 9. 9.
-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고시	‘20. 12. 23.
- 실시계획 변경(14차) 고시	‘21. 3. 23.

5. 분양현황

(단위 : 천m²)

구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7,002	10,602	‘08~‘23	한국농어촌공사

산업시설구역	9,598	9,598		
복합구역	184	184		
지원시설구역	820	820		
공공시설구역	2,668	0		
녹지구역	3,732	0		

6. 입주상황

구분	입주업체 수(개사)				면적(천㎡)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21.4월 기준	43	30	-	13	1,580	1,375	-	205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시설
교통 시설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동서·남북도로) ·단지내 도로 308개, 폭원 11~40m, 2~8차로, 연장 127km
	철도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운용 중, 단선) ·새만금항 인입철도(예타 중, 단·복선)
	항만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공항	·군산공항(운용 중) ·새만금 신공항(기본계획 중)
공급 시설	용수	·생활용수 시설용량 14천톤/일(산단 공급량 17,889㎥/일) (용담댐 → 고산정수장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시설용량 80천톤(32천톤/일 증설중, 산단 공급량 123천톤/일) (부여취수장 → 석정정수장 → 금강 광역상수도)
	전력·스팀	·변전소 설치계획 4개소 10,683㎡, 전력공급 720,000MW ·열병합발전소 스팀공급(340톤/hr)
	통신	·전화 회선수 168,051회선
	가스	·LNG 100,000㎥/hr 공급
환경 기초 시설	오폐수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43천톤/일, 산단내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운영)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

II.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m²,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95,346 (100%)	9,598,093.4 (51.9)	184,000 (1.0)	820,387.2 (4.4)	2,667,738.4 (14.4)	3,732,034.0 (20.2)	1,493,093 (8.1)

※ (녹지구역)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 (기타구역)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학교용지, 에코센터용지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1) 용도별 면적 구분

(단위 : m²)

총 면적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9,598,093.4	8,540,740.4	859,529.0	197,824.0

* (특정시설 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2)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용지	유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 시설 용지	자동차부품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일반기계부품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선기자재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
	신소재 나노융합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등
	핵융합(RFT)		24(1차금속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융복합	ICT 제조 부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서비스 부문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	58(출판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2·3차 산업 융복합	제조, 가공부문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부문	70(연구개발업)
	문화 관광 의료 융복합	제조, 가공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구 시설 용지	R&D	70(연구개발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물류 시설 용지	물류시설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301, 49302, 49303만 가능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101, 52102, 52109만 가능

* 위 표에 표기된 업종과 연계하여 융·복합 등을 위한 연관 업종 및 관련 시설 입주 가능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바.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

사.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연구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용 가능)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입주제한

가)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나)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다)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III. 2. 2)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5) 입주심사

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6)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바)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차)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7) 업종별 배치기준

가)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면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나)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8)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m ²)
총계		9,598,093.4
공장시설용도	소계	8,540,740.4
	자동차부품	2673215.8
	일반기계 및 부품	785,748.1
	조선기자재	486,822.2
	고부가가치식품	896,777.7
	신소재·나노융합	1,776,474.0
	RFT(핵융합)	708,881.5
	신재생에너지	1,212,785.1
특정시설용도	소계	1,027,353.0
	지식산업시설용도	859,529.0
	물류시설용도	197,824.0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III.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용도	시설명	면적(m ²)
합계		820,387.2
특정용도	소계	493,904.8
	주차장	115,376.0
	열공급설비	162,180.7
	가스공급설비	24,026.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
	통신시설	302.0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공공청사	12,763.0
	주유소·충전소	10,766.0
일반용도	소계	326,382.4
	기타 지원시설	326,382.4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마)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함)

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

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 한함)

마)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함)

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통신 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1)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치·운영사업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녹지구역

1)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다)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건축물의 지붕(옥상)·외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장기임대산업용지

1)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2)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3) 운영계획 : 2백만㎡

4)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5)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가.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나.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다.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6)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7)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1)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한 자

2)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IV.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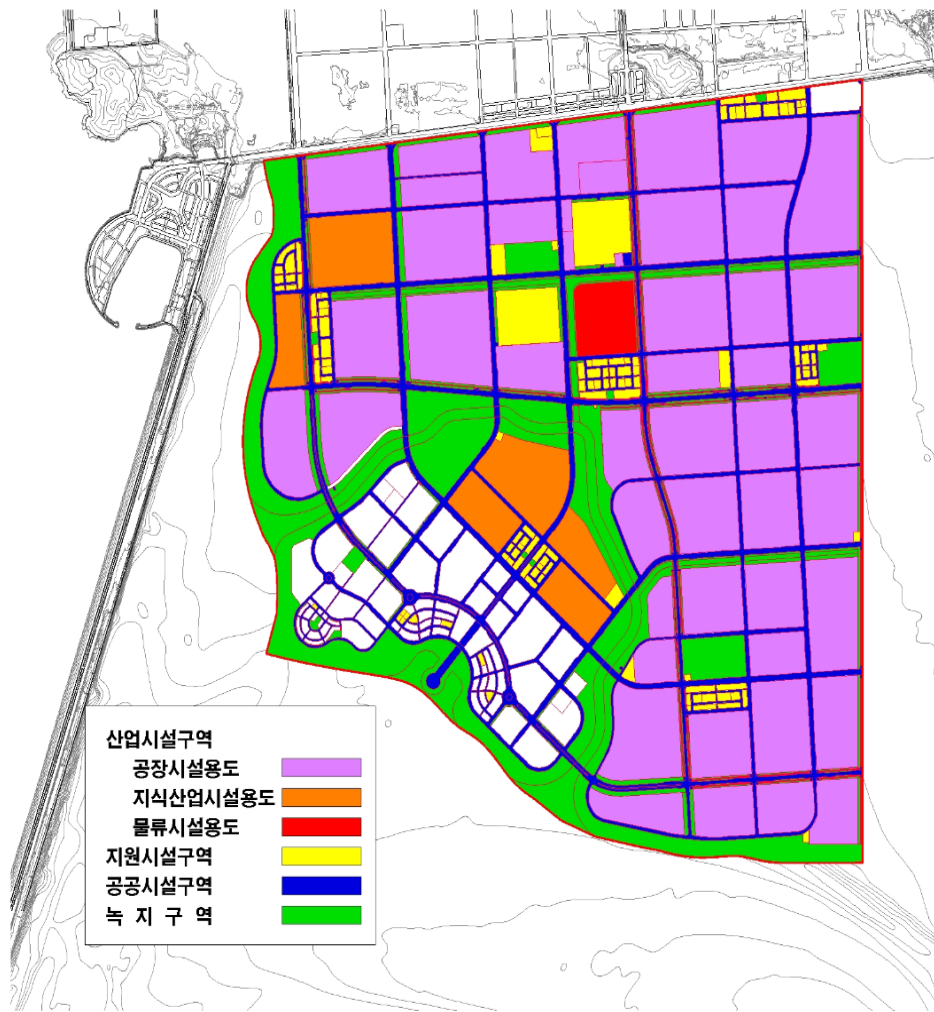
2. 환경관리

-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 별표 1> 새만금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복합구역은 산업시설구역 내로 한다.